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20분 이상	37,780	210분 이상	51,630
60분 이상	22,310	150분 이상	42,930	240분 이상	55,490
90분 이상	29,920	180분 이상	47,46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표

수급자명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부담률	
------	--	----------	--	-------	--

■ 급여제공계획 ※ 아래 내용(금액 등)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이용요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주)	급여총액	본인부담
방문요양	월, 수 금	09:00 ~ 12:00			0	0
방문요양	화, 목	16:00 ~ 18:0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주일 기준)					0	0
월간 급여액 합계 (월 4주 기준)					0	0